

고 발 장

고발인 :

1. 양대웅 , 대표고발인

[REDACTED]

[REDACTED]

2. 이상철

[REDACTED]

[REDACTED]

3. 이옥숙

[REDACTED]

[REDACTED]

피고발인 :

1. 이건희(삼성그룹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REDACTED]

2. 손욱(삼성전관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3. 윤종용(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 배정충(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 이해규(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 허택학(삼성애버랜드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 이해규(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8. 이종구(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9. 김우중(대우그룹회장, 대우자동차 대표이사,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REDACTED]

10. 장병주(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

[REDACTED]

11. 한용호(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

[REDACTED]

12. 신영균(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13. 추호식(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14. 최주완(대우할부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15. 박국경(주식회사 경남금속 대표이사)

[REDACTED]

16. 강병호(대우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17. 전주범(대우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18. 구본무(LG전자(주), LG화학(주) 대표이사)

[REDACTED]

19. 구본준(LG반도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20. 이정호(LG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21. 이창세(주식회사 실트론 대표이사)

[REDACTED]

22. 안치민(LG오웬스 코닝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23. 구자섭(LG MMA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24. 송재인(前 LG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LG정밀주
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25. 이채우(주식회사 LG마이크론 대표이사)

[REDACTED]

26. 이해승(주식회사 LG 소프트대표이사)

[REDACTED]

27. 이종수 (LG 산전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28. 성재갑(주식회사 LG화학 대표이사)

[REDACTED]

29. 정장호(주식회사 LG 텔레콤 대표이사)

[REDACTED]

30. 이수호(주식회사 LG상사 대표이사)

[REDACTED]

31. 신승교(前LG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LG돔 대표이사)

[REDACTED]

32. 강말길(주식회사 LG유통 대표이사)

[REDACTED]

33. 유수남(주식회사 LG 백화점 대표이사)

[REDACTED]

34. 이인호(주식회사 LG애드 대표이사)

[REDACTED]

35. 이현출(LG신용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36. 서경석(LG종합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37. 권오륜(LG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38. 정몽헌(현대그룹회장, 현대 종합상사 대표이사)

[REDACTED]

39. 정몽구(현대그룹회장, 현대정공 대표이사)

[REDACTED]

40. 정몽준(현대중공업 고문)

[REDACTED]

41. 정몽규(현대자동차 대표이사)

[REDACTED]

42. 김형벽(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3. 이내훈(현대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4. 박정인(현대 정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5. 박세용(현대 종합상사 주식회사, 현대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6. 조양래(현대 자동차 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7. 류인균(현대 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8. 노관호(인천 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49. 정몽혁(현대 정유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REDACTED]

50. 이경배 (현대 정유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1. 변태성(현대 리바트 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

52. 김주용(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3. 백창기 (대한 알루미늄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4. 권수식(현대 강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5. 백영문(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6. 이정일 (주식회사 현대 미포 조선 대표이사)

[REDACTED]

57. 심옥진(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58. 백효휘(주식회사 케피코대표이사)

[REDACTED]

59. 김택호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0. 한기환(현대중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1. 채수삼(주식회사 금강기획 대표이사

현대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2. 이익치(현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3. 서재진(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4. 김영일(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5. 김용재(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

66. 김호일(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

67. 김중웅(주식회사,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REDACTED]

68. 김동진(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69. 최경희(현대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0. 김영환(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1. 유홍중(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2. 이창식(국민투자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3. 남창우(SK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4. 김승정(SK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5. 손길승(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6. 장용균(SK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7. 최동일 (SK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8. 정순착(SK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79. 조민호(SK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80. 윤대욱(SK옥시케미칼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81. 이인상(SK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82. 허정구(SK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83. 이회진(SK투자신탁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84. 서정보(SK에너지 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REDACTED]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1.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각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회사의 경영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부실한 계열 회사에는 부당한 이득을 주고 자사에는 심대한 손해를 입힌 자들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1항(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금을 계열회사간의 자금고와 같이 인식하고 유용하는 기업집단의 경영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조장되며 독립기업들의 존립기반이 상실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집단내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우량계열사마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작게는 지원주체인 우량계열사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크게는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자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각 기업체의 주주들과 회사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사들은 그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2. 당사자의 지위

(1) 고발인들의 지위

고발인들은 오늘의 IMF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과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

의 의지를 대변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시민운동단체 참여연대에 속한 회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지위

1)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은 해당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상법 제397조, 제398조 및 제412조의 2 등에 의해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명백히 손해가 될 행위를 결의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될 의무 또한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현대중공업 고문 정몽준,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삼성, 현대, 대우를 각각 통괄하여 경영하는 사실상의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경영에 있어서 위의 대표이사가 가지는 주의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상법개정안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실상의 이사'조항의 입법예고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은 사무처리의 법적, 계약적 근거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3)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각계열회사들의 대표이사입니다.

3. 범죄사실 -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

가. 삼성그룹 관련 피고발인 8인의 배임행위

(1) 계열회사가 발행한 CP를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삼성생명보험(주)는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이용하여 1997.4.1~1998.3.31기간 중 조흥은행 등 8개 은

행의 특정금전신탁계정(特定金銭信託)에 2,335억원을 예치하고, 수탁자인 조흥은행 등 8개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자동차(주), 삼성에버랜드(주), 한솔제지(주)가 발행한 CP를 동일 신용등급 CP의 할인률보다 낮은 11.63%~14.70%로 계속하여 할인, 매입토록 하여 위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참고:표1)

<표1>

삼성생명의 특정금전신탁 자금 운용 내용

(단위:백만원,%)

은행명	삼성생명			특정편입 당시의 유가증권 정상시장 수익률('98.3월)			비고
	특정가입 일	특정 가입액	'98.6월 현재수익률	RP	CD	CP	
조흥은행	97.6.5 97.4.30	10,000 20,000	12.61 10.60	22.61 "	22.60 "	23.52 "	*삼성생명의 특정 금전신탁: 주로 CP편입 *RP,CD,CP의 수 익률은 3개월
서울은행	97.6.27	10,000	13.30	"	"	"	
상업은행	97.5.30	20,000	12.93	"	"	"	
동화은행	97.6.27	10,000	12.20	"	"	"	
보람은행	97.5.29	10,000	12.64	"	"	"	
한일은행	97.9.26	50,000	13.68	"	"	"	

피고발인 이중구는 계열사의 CP를 매입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매입에 있어 적정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계열사의 연수원을 고가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여 임차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1) 삼성전관, 삼성생명, 삼성전자 및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소유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국제 경영 연수원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임대 보증금 234억원과 매월 임차료를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참고:표2) 또한 이와는 별도로 위 국제경영연수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임차 계열회사의 1인당 시설 사용료 595천원보다 많은 1인당 시설사용료 835천원을 삼성물산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참고:표3)

<표2>

임대차현황

(단위:백만원)

임차 계열사	보증금	월임차료	월임차료 환산합산	평 당 보증금	임차면적 (평)		계약 기간	총투자비
삼성전관	3,125	17	4,458	10.2	438	10%	"94.12" "99.12"	40,562
삼성생명	3,125	17	4,459	10.2	438	10%		
삼성전자	15,625	83	22,292	10.2	2,194	50%		
삼성화재	1,562	8	2,229	10.2	219	5%		
계	23,437	125	33,438		3,289	75%		

<표3>

'97년국제연수원이용실적 및 사용료

(단위:백만원)

구분	회사명	사용료	비율	교육인원 (명)	비율	해외 주재원수	1인당 평균사용료
임차 계열사	삼성전관	166	4.8	272	5.4	149	
	삼성생명	114	3.3	181	3.6	8	
	삼성전자	1,586	46.0	1,181	36.1	669	
	삼성화재	63	1.8	38	0.7	12	
소계		1,929	55.9	2,309	45.8	838	835천원
비임차 계열사	SDS등	1,500	43.4	2,519	49.9		595천원
비계열사		19	0.6	214	4.3		89천원
합계		3,448	100	5,042	100		

동연수원을 대도시 빌딩 평당임차료 7백만원 보다도 훨씬 많은 평당 천만원에 이르는 고가로 임차한 점, 이용실적상으로도 임차계열사의 임차면적(75%)에 비해 이용실적은 45.8%에 불과하고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1997년 1년간 총 교육인원이 38명에 불과한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위 행위는 삼성물산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것임에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손욱, 이종구, 윤종용들은 계열사의 연수원을 임차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시중의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임차하여 매입에 있어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삼성전관,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항공산업(주) 및 삼성생명은 삼성중공업 소유 경상남도 산

청군 소재 연수원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에게 임대보증금 350억원은 임대차 계약일에, 임차료는 매월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참고:표4), 또한 이외는 별도로 산청연수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임차계열회사의 시설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인 1인당 시설사용료 99,000원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참고:표5)

<표4>

임대차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약일자	보증금①	월임차료②	월임차료환산 합산①+②	평당 보증금	임차면적(평)		총투자비
삼성전관	97.7.4	15,000	47.5	18,800	9.1	2,073	30%	52,418
삼성전자	97.6.14	5,000	15.8	6,266	9.1	691	10%	
삼성화재	97.6.19	5,000	15.8	6,266	9.1	691	10%	
삼성항공	97.7.15	5,000	15.8	6,266	9.1	69	10%	
삼성생명	97.6.19	5,000	15.8	6,266	9.1	691	10%	
		35,000	110.7	43,864		4,837	70%	

<표5>

'97.7~'98.5 간 연수원 사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회사명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고
		사용료	인원(명)	1인당평 균사용료	사용료	인원(명)	1인당평 균사용료	
임차 계열사	삼성전관	167	3,561		11	194		
	삼성전자	261	774		10	137		
	삼성화재	1	56		4	68		
	삼성항공	131	1,272		18	381		
	삼성생명	3	47		14	256		
소계		563 (68.8%)	5,710 (73.8%)	99천원	57 (43.5%)	1,036 (48.3%)	55천원	
비임차 계열사	삼성상용	165 (20.2%)	1,587 (20.5%)	104천원	74 (56.5%)	1,014 (47.3%)	73천원	삼성중공업 (주)포함
	차등							
비계열사		90 (11.0%)	440 (5.7%)	204천원	-	92 (4.4%)		
합계		818 (100%)	7,737 (100%)		131 (100%)	2,142 (100%)		

동 연수원을 대도시 빌딩 평당임차료 7백만원 보다도 훨씬 많은 평당 9백만원에 이르는 고가로 임차한 점, 전용사용 시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과 휴양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지급한 점, 특히 삼성화재 및 삼성생명은 그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위 행위는 삼성중공업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것임에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손욱, 윤종용, 배청중, 이해규 등은 계열사의 연수원을 임차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시중의 적절한 가격으로 이를 임차하여 매입에 있어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 및 무담보의 저리의 대어를 통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삼성에버랜드(주)는 무진개발(주)에게 1995.3.부터 1996.12.까지 대여금 18,210백만원에 대한 이자 3,811백만원을 1998.4.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진개발 및 (주)연포레저개발에게 담보없이 이자율 연20%로 8,642백만원 및 1,800백만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6>

자금대여내역

(단위:백만원)

지원객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정상이자율
무진개발	8,642	'98.1.1~'98.12.31	20%	29.21%
연포레저	1,550	'98.2.20~'98.12.31	20%	26.42%
	250	'98.3.6~'98.12.31	20%	24.93%
계	10,442	-		

*정상이자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말 평균당좌대출금리

피고발인 허택학은 계열사에 대여금 지급을 결의 집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여금을 지급기일에 회수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임무 및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적절한 이자로서 이를 대여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계열사에게 임대보증금 지급을 지원을 통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삼성중공업은 1997.10부터 1998.3.31사이에 삼성물산에게 삼성자동차판매영업장을 임대해 주면서 임대보증금 6,744백만원 및 임대료 1,170백만원 합계 7,914백만원을 1개월 내지 9개월간 지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참고:표7)

<표7>

지연지급내역

(단위:백만원)

피심인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금액	지연이자	금액	지연이자	금액	지연이자
삼성생명	1,459	58	885	34	2,344	92
삼성화재	438	18	244	6	682	24
삼성중공업	4,847	122	41	1	4,888	123
합계	6,744	198	1,170	41	7,914	239

무진개발 및 연포레저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이 잠식된 기업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특히 무진개발로부터는 1995년도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1,811백만원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성랜드의 대여금이자 미회수행위 및 자금대여행위는 열악한 재무구조로 사실상 대여금 회수가 불투명한 계열사에게 무상 또는 정상이자율보다 4%p 내지 9%p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제공하여 동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이중구, 배청중, 이해규들은 계열사에 대여금 지급을 결의 집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회사이익을 도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납기일을 연기함으로써 통상 기대되는 회사의 이익의 발생을 막아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계열사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삼성전관(주)는 1997.1.11부터 같은 해 12.30.사이에 자기부담으로 삼성전관 천안공장의 부지안에 299,357백만원을 투자하여 TFT-LCD(컴퓨터모니터 액정화면)생산을 위한 공장건물과 일부기계장

치를 설치하여 1998.1부터 계열회사인 삼성전판에게 사용토록 하면서(참고:표8) 1998.4.15에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이후에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참고:표9)

<표8> 삼성전판의 TFT-LCD공장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건축물	116,828	20,896평
기계장치	123,748	Clean Room 및 UTILITY설비
건축물 및 무형자산	23,190	폐수처리장등
토지	18,820	33,455평
공동자산(복지동등)	16,762	UTILITY시설등
합계	299,357	

<표9>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백만원)

계약기간	임대료							지급방법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매월지급
'98.4.15~ 2003.12.31	68,304	64,243	60,182	56,121	52,060	47,999	348,909	

통상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용하기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삼성전자가 공장을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1998.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3.17.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1998.4.27 이후에 지급한 점, TFT-LCD 국내생산에 있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경쟁사에 '바해 감소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1997년도 부채가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삼성전자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손욱은 삼성전판의 대표이사로서 계열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적기에 하여 임대료회수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상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6) 그룹회장 이진희는 위 (1)에서 (5)까지의 각회사의 대표이사들의 행위를 공모하여 이를 당시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계열사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였던 바, 각 범죄 사실을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주도하고 위 대표이사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여 행위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민.상법상의 법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법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계약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의 것으로도 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회장 이권회는 위 각각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대우그룹 관련 피고발인 9인의 배임행위

(1) 주식매각대금과 공사대금의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1) (주)대우는 1994.12.1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은행 주식과 한국종금 주식을 계열회사인 (주)대우개발에 매각하고 1997.4.2. 현재 그 매각대금 중 일부인 6,626백만원을 어음으로 수령한후, 이의 결제시기를 늦추어 오다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7.10 (주)대우개발로부터 한국종금 주식 246,133주를 5,612백만원에 다시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매각대금 잔액 1,014백만원을 1998.3.31 현재까지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표1> 주식매각 및 매입대금 상계처리 내역 (단위:백만원)

매도자	미수금 (A)	매입일자	주식명	단가	주식수	매입대금 (B)	최종미수금 (A-B)
(주)대우개발	6,626	1997.7.10	한국종금	22,800원	246,133	5,612	1,014

2) (주)대우는 계열회사인 (주)대우개발로부터 경주 힐튼호텔, 경주미술관, 경주기숙사 등을 건설위탁받아 1991.7.27부터 1992.6.15까지의 기간 중 시공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6.4. 현재 총공사대금 470억원 중 134억원을 지급 받지 않고 있다가 그 중 20억원은 1997.6.28.에 지급받고 나머지 114억원은 1998.3.31까지 지급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 장병주, 한병호들은 주식매각대금과 공사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대우개발에게 위 미회수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상당

액 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2)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무이자 분할상환 판매에 따른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1) (주)대우(무역부문), 대우할부금융(주) 및 (주)경남금속은 1997.4월부터 1998.5월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이 판매하는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자동차구입대금으로 각각 12,796백만원(1,275대), 511백만원(63대), 807백만원(94대)을 자신들의 자금에서 무이자 36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해준 사실이 있고,

2) (주)대우(건설부문)는 같은 기간 중 자신의 자금으로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이 판매하는 자동차 620대(6,389백만원)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후, 이 중 597대(4,249백만원)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무이자 분할상환조건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3) 대우중공업(주)는 같은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이 판매하는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자동차수입대금을 자신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상업은행 역전지점, 국민은행 옥포지점)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 준 후, 그 대출금 34,103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소속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들은 (주)대우자판이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동차를 판매함에 따른 이자부담을 당해 회사가 대신 부담하여 결국 (주)대우자판에게 52,466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이를 36개월에 걸쳐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주)대우자판에 대하여 52,466백만원에 대한 적정 이자상당액 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장병주, 한용호, 최주완, 박국경들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대출하거나 회사의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의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가지고 이를 결의 집행할 임무가 있는 바, 회사의 손해가 될 행위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충당전입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대우는 1991년부터 1998.3월말까지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주) 국민차부문 및 상용차부문과 자동차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1997.4월 현재 대우중공업(주) 국민차 부문에 2,392명, 대우중공업(주) 상용차부문에 1,072명 등 총 3,464명의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조위탁보수지급관련합의서' 내용에 따라 발생한 용역금액 중 월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 및 용역수수료는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퇴직충당금전입액은 다음<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청구액 37,277백만원을 1998.3.31.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2>

퇴직충당금전입액 미회수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대우중공업(주)국민차부문			대우중공업(주)상용차부문			미회수금 합계
	전입액	회수액	미회수액	전입액	회수액	미회수액	
91년 당해설정액	1,683		1,683				1,683
92년 "	2,136	100	2,063				2,063
93년 "	2,592	633	1,959				1,959
94년 "	3,275	150	3,125	144		144	3,269
95년 "	6,044	891	5,153	1,066		1,066	6,219
96년 "	7,242	593	6,649	1,738	200	1,538	8,187
97년 "	8,170	1,640	6,530	2,912	518	2,394	8,924
합 계	31,142	4,007	27,135	5,860	718	5,142	32,277

위의 행위는 대우중공업(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파견인력에 대한 퇴직금 충당 전입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결국 대우중공업(주)에 대해 미회수 퇴직충당금 전입액 32,277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의 행위는, 대우중공업(주)에게 퇴직충당금 전입액 32,277백만원에 대한 적정 이자상당액 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장병주, 한용호들은 퇴직금충당 전입액을 적기에 회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대우개발에게 위 미회수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상당액 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4)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대우는 1997.1.16.부터 1998.5.6.까지의 기간 중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주)스피디코리아에게

건축비, 임차보증금, 급여, 로열티, 장비-물품구입비, 기술교육비 등에 사용할 사업운영자금 3,482백만원을 자체 능력으로 은행차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를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3,482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주)스피디코리아에 3,482백만원에 대한 적정 이자상당액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장병주, 한용호등은 대여금을 적기에 회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대우개발에게 위 미회수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상당액 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5) 후순위 사채를 낮은 이자율로 매입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대우자동차(주) 및 대우전자(주)는,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주)가 발행한 2,000억원규모의 후순위 사모사채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역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3> 후순위 사모사채 인수내역 (단위:억원)

사채의 명칭 (발행일자)	사채총액	인수내역		사채의 종류 및 이율
		인수회사명	인수금액	
제4회 무보증사채 (1998.1.23)	600	(주)대우 대우자동차(주) 대우전자(주)	200 200 200	<종류> 2년만기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채권 <이율>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91일물 CD 최종호가수익률의 단순평균 에서 1%p를 차감한 변동이율(3 개월 선행)
제5회 무보증사채 (1998.1.24)	700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대우자동차(주) 대우전자(주)	200 200 200 100	
제6회 무보증사채 (1998.1.26)	300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200 100	
제7회 무보증사채 (1998.1.30)	400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200 200	
합계	2,000	합계	2,000	

후순위사채란 사채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전액이 변제된 후에야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무보증이기 때문에 유통에 제한을 받게되고 인수자의 위험부담

이 크다는 점,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은 후순위사채의 무담보 무보증 및 원금상환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보증 사채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점 등, 위 행위는 합리적 투자목적이 아닌 대우증권(주)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동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서 인수하여 동 계열사에 부당한 이득을 주고 자사에 손해를 입힌 것임에 분명합니다.

피고발인 장병주, 한용호, 신영균, 추호석, 강병호, 전주범들은 후순위 사채를 인수한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사채의 매입에 있어서 그 안전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6) 그룹회장 김우중은 위 1)에서 5)까지의 각회사의 대표이사들의 행위를 공모하여 이를 당시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계열사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였던 바 각 범죄 사실을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주도하고 위 대표이사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여 행위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민.상법상의 법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법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계약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의 것으로도 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회장 김우중은 위 각각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다. LG그룹 관련 피고발인 20인의 배임행위

(1) 부실계열사의 후순위 채권을 낮은 이자율로 매입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1) LG반도체(주), (주)LG화학, LG정보통신(주), (주)LG상사, LG산전(주), LG건설(주), LG석유화학(주), (주)LG유통 및 LG신용카드(주)등 9개사는 1997.11.29. 계열사인 LG종합금융(주)이 발행한 896억원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역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표1

참조)

(표1) LG종합금융(주)후순위 채권 매입내역

(단위: 억원)

발행 및 매입일	인수회사	매입금액	만기	이율	비고
1997.11.29.	(주)LG화학	100	5년6월	13.06%	1997.11.29현재 3년만기회사채수익률: 15.10% 당좌대출금리: 18.5%
	LG반도체(주)	150			
	LG정보통신(주)	100			
	(주)LG상사	100			
	LG산전(주)	100			
	LG건설(주)	96			
	LG석유화학(주)	100			
	(주)LG유통	50			
	LG신용카드(주)	100			
합계		896			

후순위 채권은 채권발행회사의 파산등으로 잔여채산을 청산할 경우 일반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야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되고 또한 채권자의 자금상황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만기이전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이나 회사채에 비해 인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이며 이러한 특성상 그 이자율은 통상의 이자율(당시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15.1%)보다 상당수준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일반 금리수준보다 낮은 이자율로 적자 계열사인 LG석유화학(주), LG반도체(주), (주)LG 상사까지 참여하여, 당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게된 위기상황에서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던 종금사의 하나인 LG종합금융(주)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은 합리적 투자목적이 아닌 LG 종합금융(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수한 것으로 지원주체인회사에게는 통상의 이자율과의 차액 그리고 후순위 변제의 위험이라는 손해를 가져온 것이며 동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2) LG반도체(주), LG석유화학(주), (주)LG텔레콤, LG산전(주), (주)LG백화점, LG건설(주), (주)실트론, (주)LG마이크론, LG정밀(주), (주)LG애드, (주)LG유통, LG오웬스코닝(주), (주)LG소프트

및 LGMMA(주)등 14개사는 1997.12.15.부터 17.까지의 기간중 3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LG증권(주)에서 발행한 2000억원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2 참조)

(표2) LG증권(주)후순위 채권 매입내역

(단위:억원)

발행 및 매입일	인수회사	매입금액	만기	이율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1997.12.15.	LG석유화학(주)	200	3년	11.0%	20.78%
	(주)LG텔레콤	200			
	LG 산전(주)	200			
	(주)LG백화점	200			
	LG전설(주)	100			
	(주)실트론	100			
1997.12.16.	(주)LG마이크론	180	3년	9.94%	21.20%
	LG정밀(주)	200			
	LG반도체(주)	100			
	(주)LG에드	100			
	(주)LG유통	100			
	LG오웬스코닝(주)	100			
1997.12.17	(주)LG소프트	120	3년	11.0%	23.31%
	LG MMA(주)	100			
합계		2,000			

피고발인들이 계열회사인 LG증권(주)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1997.12.15부터 17.당시는 한국경제가 IMF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국내금융시장의 경색으로 금융사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이러한 시점에서 존립자체가 불투명한 증권사의 후순위 채권을 당시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매입함으로써 자사(인수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LG증권에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들(이중 서경석(LG 종금(주)대표이사)과 권오륜(LG칼텍스(주)대표이사)은 제외됩니다.)은 후순위 사채를 인수한 각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사채의 매입에 있어서 그안전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저리에탁을 통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LG 반도체(주)는 1997.4.1.부터 1998.3.31.까지의 기간중 계열회사인 LG 종합금융(주)에 총55회에 걸쳐 4,642억원을 3일 내지 181일 동안 정상수신금리에 비해 저리로 예치하였습니다. 즉, 통상 기업의 재무활동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신 금융기관인 LG 종합금융(주)의 기준수신금리보다 2%내지 3%낮게 저리로 지속적으로 예탁함으로써 그 금리차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LG 종합금융(주)제공하고 그 이익상당의 손해를 자사가 감수하게 하였습니다. LG반도체(주)의 대표이사 구본준은 재무활동에 있어 고수익을 추구해야 할 임무가 있는 대표이사임에도 이러한 임무를 해태하여 위의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현저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기업어음 매입을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LG 반도체(주)는 1997.11.6 나라종금(주)를 통하여 친족독립 경영회사인 회성전선(주)의 기업어음 300억원을 할인율8.0%에 매입하였으며 1997.12.12 한불종금(주)를 통하여 역시 회성금속(주)의 기업어음 116억을 할인율 8.0%에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업어음 평균할인율이 각각 12.64%(1997.11.6), 14.25%(1997.12.12)였음에도 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제 매입할인율과 평균할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어음 할인료 상당액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이익을 회성전선과 회성금속에게 제공하였습니다. LG 반도체(주)의 대표이사 구본준은 기업어음 할인에 있어서 평균할인율 상회하여 어음할인에 의한 회사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저리대출을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LG 종합금융(주)는 1998.3.23. 및 같은달 27.총 2회에 걸쳐 자회사인 LG Finance HK에 미화 167,130,914달러(230,440백만원)을 자신의 외화단기 차입금 평균 금리(연리 9.58%)보다 저리인 연리 6.7%로 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LG종합금융(주)의 행위는 고금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손

실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외화자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LG Finance HK에 평균 단기차입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만큼의 손실을 자사가 부담하여 회사의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LG종합금융(주)의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서경석은 차입시의 금리와 비교하여 대출시의 금리가 더 낮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시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해태하고 위와 같은 손해를 회사에 가져오게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낮은 금리를 적용한 무담보대출에 의한 대여금지원을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LG칼텍스가스(주)는 1997.4.1부터 1998.3.31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원전에너지(주)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대여금을 지원하고, 특히 원전에너지(주)에 대해 적용한 금리(1997.4월--12월:12%, 1998.1월--3월:20%)가 당시의 일반정상금리(1997.4월--12월 :17.37 , 1998.1월--3월:26.85%)보다 평균5.74%낮은 수준이었으며 비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와는 달리 무담보대출을 하였던 바,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낸 자본금 잠식업체인 원전에너지(주)에 대한 이와 같은 대여행위는 그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LG칼텍스(주)의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권오륜은 대여금 지원을 함에 있어 통상 지켜야 할 채무행위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한 무담보대출을 함으로써 그 임무를 해태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현대그룹 관련 피고발인 35인의 배임행위

(1) 낮은 금리를 적용한 부실계열사의 무보증 전환사채의 인수를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 , 현대중공업(주), 현대정공(주),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자동차서비스(주), 현대상선(주), 현대산업개발(주), 인천제철(주), 현대정유(주), 현대석유화학(주), 고려산업개발(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증권(주), 현대종합금융(주), 현대해상화

재보험(주), 현대할부금융(주), 및 국민투자증권(주)는 '97. 11.19-- 98. 3.12'기간 중 3년 연속 적자이고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계열사인 대한알루미늄공업(주)와 현대리바트(주)가 발행한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100억원과 500억원을 11--18%이자율로 각각 인수하였습니다. 당시에 대한알루미늄 및 현대리바트가 완전한 자본잠식상태여서 자력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웠고, 피고발인들이 인수한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재무상황으로 보아 계열사이외의 제3자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무보증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상의 기준주가보다 113%--217%로 높고,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전환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당시 수혜업체의 당좌대출금리가 18.11%--30.00%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명확하며, 이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이므로 의심의 여지 또한 없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위 각 인수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재무활동에 있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낮은 이자율로 전환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무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인수회사에 손해가 되고 부실계열사에 이익을 주게 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한 부실기업어음인수를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종합금융(주), 현대전자산업(주)는 97. 12.2--97. 12.9사이에 친족독립경영회사인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자원, 한라건설, 한라시멘트 이상 5개사의 부도직전에 당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총액 4704억원에 이르게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도에 직면한 회사의 기업어음은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로 인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00--23.10%를 적용한 바, 이는 정상금리라고 볼 수 있는 당시 은행평균당좌대출금리 37.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가 비록 할인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과 실제로 당시에 종합금융회사들이 만기도래 기업어음을 연장해 주는 방편으로 5개 한라계열사들이 발행한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것 이외에는 기타 회사들이 이들 회사가 발행한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예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적인 투자활동이 아니었으며,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발생을 무릅쓰고 자

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해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위5개사의 대표이사들인 피고발인들은 회사의 수익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무활동을 결재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부실기업의 기업어음을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과다한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주), 현대자동차(주), 현대건설(주), 현대정공(주),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자동차서비스(주), 현대상선(주), 현대산업개발(주), 인천제철(주), 현대정유(주), 현대정유판매(주), 현대석유화학(주), 현대리마트(주), 고려산업개발(주), 대한알루미늄공업(주), 현대강관(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케피코, 현대정보기술(주), 현대중기산업(주), (주)금강기획, 현대방송(주), 현대증권(주), 현대종합금융(주), 금강개발산업(주), 현대알루미늄공업(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현대경제연구원, 현대우주항공(주), 및 현대물류(주)는 현대기업집단 계열사들로서 역시 계열회사인 현대전자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1의 1 소재 15000평에 신축중인 연구소에 대하여 97. 5.31 현대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7. 5.31--97. 9.30 기간 중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신축중인 건물은 현대전자의 연구시설이므로 32개 현대계열사들의 4급이상 임.직원의 비율로 임대할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인데, 당시 공사진척도가 20%에 불과한 시점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 점, 심지어 3년 이상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계열회사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같이 단지 계열회사들을 돕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므로 회사공금의 부당한 남용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피고발인들이 이를 결의, 집행한 것은 당연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부당한 선급금의 지급을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95. 12.14에 현대중공업(주)로부터 선급금 150억원의 지급요청을 받고, 같은달 15.에 1년 거치 후 납품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150억원을 무이자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납품대가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98. 1.12에 전액을 상환받음으로써 97. 4.1부터 98. 1.12까지의 287일 동안 150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97. 3.8에도 현대중공업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 97. 4.1부터 98. 1.12까지 100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95. 12.4에는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현대금속에 특정거래사실과 관계가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무이자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이란 상품의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를 제조, 판매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개는 상품대금과 상계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는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품대금과 상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품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95. 12.6자로 현대금속에 지급된 선급금 100억원의 경우, 특정 거래사실과 전혀 관계없이 지급된 점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선급금이 아니라 단지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별개의 법인인 자회사에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표이사인 피고발인이 오히려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이 틀림없습니다.

(5) 현대중공업 고문 정몽준은 위 (1)에서 (3)까지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행위를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중공업의 고문이자 대주주로서 각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주도하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이를 공모하여 행위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민.상법상의 법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법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계약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의 것으로도 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현대중공업 고문 정몽준은 위 각각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마. SK그룹 관련 피고발인 12인의 배임행위

(1) 부실계열사의 후순위 채권을 낮은 이자율로 매입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SK상사(주), SK가스(주), SK옥시케미칼(주), SKC(주), SK케미칼(주), SK에너지 판매(주) 6개사는 SK증권(주)가 98. 2.28 및 3.30자로 발행한 35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12.57%와 14.66%의 수익률로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SK증권(주)는 95년부터 3년 연속 적자(97사업년도에는 3422억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였으며, 98 2월말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268.4%로서 이미 폐쇄된 동서증권(주)나 고려증권(주)보다도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그당시 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율의 유통수익률 20.5%와 18.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인수한 것은 단지 계열사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자기 회사의 이익을 해한 행위입니다. (표1 참조)

(표1)

(단위 :백만원)

매입회사	일 자	이 자 율	금 액	사채의 종류
SK가스(주)	98.2.28	12.57%	30,000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만기후이자지급)
	98.3.30	14.66%	30,000	
SK옥시케미칼(주)	98.2.28	12.57%	30,000	
	98.3.30	14.66%	20,000	
SK상사(주)	98.2.28	12.57%	60,000	
	98.3.30	14.66%	50,000	
SKC(주)	98.2.28	12.57%	30,000	
SK케미칼(주)	98.3.30	14.66%	50,000	
SK에너지판매(주)	98.3.30	14.66%	50,000	
합 계	-	-	350,000	

피고발인들은 후순위 사채를 인수한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사채의 매입에 있어서 그 안전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주식투자를 전허하지 않는 거액의 증권에탁금의 예치를 하는 형태의 부당한 지원을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SK(주), SKC(주), SK투자신탁운용(주), SK캐피탈(주), SK가스(주), SK건설(주), SK유통(주), SK텔레콤(주)등 8개사는 97.12.2부터 98.3.31 기간중에 계열사인 SK증권(주)에 개설한 자사거래구좌에 고객예탁금 명목으로 4076억원을 예치만하고 주식투자를 전혀 하지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금리가 24.93%--37.48%인 점을 고려할 때 금리가 연 5%에 불과한 예탁금으로 거액을 예치한 것은 자기 기업집단의 부실한 계열사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이로 인하여 당연히 금리의 차액만큼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SK증권의 부당한 이익은 약 12,428백만원이며 위 8개사의 손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표2 참조)

표2)

(단위 : 백만원)

회사	SK	SK텔레콤	SKC	SK건설	SK가스	SK유통	SK투신	SK캐피탈
손해금액	7,980	210.9	17.1	2,627.7	29.45	1,529.5	0.94	35.15

예탁한 각사의 대표이사들인 피고인들은 기업재무활동에 있어서의 수익성의 추구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기하여 이러한 손해를 자사에 끼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합리적 이유없이 참여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SK건설(주), SKC(주), SK에너지 판매(주), SK가스(주), SK옥시케미칼(주), SK유통(주) 6개사는 98. 3.20 SK증권(주)의 유상증자시 9400만주를 주당 3200원(액면가 5000원)에 매입하고, 총2996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SK증권(주)는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금융위기상황에서 계열사이외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 6개 계열사는 증자참여 전 SK증권(주)에 대한 지분이 없고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어 별다른 투자유인이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유상증자참여의 설득력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 역시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사의 위험을

감수한 행위입니다.

주식을 매입한 각 사의 대표이사들은 타사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그 수익성과 건실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계열사인 SK증권(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고발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라는 이유로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부실한 계열사에 이득을 주고 이로 인하여 자사의 주주들과 회사채권자들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의 범죄사실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부실경영의 책임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제금융의 위기속에서 서민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어 왔던 바, 부실경영의 주체들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곧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정의를 옹호해 세우는 것이므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동안의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0. 16

고발인 :

1. 양대웅 [REDACTED] 대표고발인

[REDACTED]
[REDACTED]

2. 이상철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이옥숙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증거자료를 별첨합니다.

증거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8-171호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8-172호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8-173호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8-174호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8-175호